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12
----------	-------

발의연월일 : 2026. 8. 26.

발 의 자 : 김승수 · 안철수 · 임종득
김용태 · 이종욱 · 최은석
조승환 · 이종배 · 강대식
구자근 · 김선교 · 김소희
서천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필수 주거시설이나, 고물가 속에 기숙사비가 지속 인상되며 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 시설 노후화 개선이나 서비스 향상 없이 관리비가 반복 인상되고, 산정 근거와 운영원가가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책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기숙사비심의위원회 설치와 학생위원 비율(10분의 3 이상)만 규정할 뿐, 원가 검증 권한과 회의록 공개 범위가 불명확해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기숙사비심의위원회가 운영원가 및 산정근거를 회의록에 기록·공개하도록 하고,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등을 감안해 적정 기숙사비를 책정하도록 함. 또한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

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고, 위반 시 교육부장관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를 통해 기숙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높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당한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주요내용

- 가.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는 학생기숙사의 운영비용 및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연도별 지원계획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학생기숙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4항).
- 나. 기숙사비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6항).
- 다. 기숙사비심의위원회는 기숙사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학교에게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423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기숙사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숙사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기숙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④ 기숙사심의위원회는 기숙사의 운영비용 및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연도별 지원계획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학생기숙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 ⑤ 기숙사심의위원회는 기숙사비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기숙사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학생이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식비, 기타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기숙사 운영원가 및 기숙사비 산정근거를 포함한다)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숙사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기숙사심의위원회는 기숙사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책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교육부장관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기숙사비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423호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제11조의2(기숙사비 및 기숙사비 심의위원회) ① (생 략) ② 학교는 기숙사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u>기숙사비심의위원회</u>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법률 제21423호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제11조의2(기숙사비 및 기숙사비 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기숙사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숙사심의위원회”라 한다)</u>-----. ----- ----- -----. 1. ~ 4. (현행과 같음) ③ <u>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기숙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u> ④ <u>기숙사심의위원회는 기숙사의 운영비용 및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근거, 도시근로자</u>

<신 설>

<신 설>

평균가계소득,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연도별 지원계획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학생기숙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⑤ 기숙사심의위원회는 기숙사비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기숙사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학생이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식비, 기타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기숙사 운영원가 및 기숙사비 산정 근거를 포함한다)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

	<u>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u> <u>는 기숙사심의위원회의 의결로</u> <u>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u> <u>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신 설></u>	⑦ <u>기숙사심의위원회는 기숙사</u> <u>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u> <u>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u> <u>배를 초과하게 책정하여서는</u> <u>아니 된다.</u>
<u><신 설></u>	⑧ <u>교육부장관은 제7항에도 불</u> <u>구하고 학교가 기숙사비의 인</u> <u>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u> <u>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u> <u>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u> <u>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u> <u>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u>
③ (생 략)	⑨ (현행 제3항과 같음)